## 미성년[1]후견[2]후견감독 개시신고서

※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 ፟፟\$ 선택항목에는 '영규(○)'로 퓨시하기 바랍니다.

**수 시 대한법률구조공단** 

년 일)

① 미성 년자	성	명	한글	(성) /(명)		한자	(성)	/ (명)		주민등록	번호	-
	등록기	기준지				'				출생연~	월 일	
	주	소										
② 후견인 (임무 대행자)	성	명	한글	(성) / (명)		한자	(성)	/ (명)		주민등록	번호	_
	등록기준지									출생연월일		
	주	소										
③ 후견 감독인	성	명	한글	(성) /(명)	(성) / (명)		자 (성) / (명)			주민등록번호		_
	등록기준지									출생연월일		
	주	소										
④ 신고인	성	며	(성)	/ (명)			(6	① 또는 서	서명.	전 화		
	0 0		( 0)	/ (0)		<u> </u>		0	이메일			
	자 격 [] [		1 0	]성년후견인 ②미			미성년후견인임		임	무대행자	· [3] [] /	성년후견감독인
⑤개시일자 및 원인					년		월	일				
⑥취임일자 및 원인					년		월	일		1기지정	22선정	3법정
⑦심 판 일 자					년		월	일	밭	<b>1</b> 원명		
87												
⑨제출인 성명				주민등록번호 -								

## 작 성 밧 법

- ※ 등록기준지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.※ 주민등록번호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) 를 기재합니다.
- ①②③란: 미성년후견감독인 없이 미성년후견인(미성년후견인임무대행자)만 있는 경우, 후견감독인란은 비워 두고 나머지의 경우 순석대로 기재하면 됩니다.
  - :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
- 생약을 ㅜ 있습니다.
  (⑤란: 개시일자 및 원인은 2013. 7. 17. 친권자 사망(친권상실, 친권자 행방불명 등)으로 기재합니다.
  (⑥란: 지정후견인·후견감독인의 취임연월일은 후견개시원인(친권자 사망)이 발생한 날을 기재합니다.
  : 선정후견인·후견감독인, 후견인임무대행자의 취임연월일은 선임심판일을 기재합니다.
  (⑦란: 심판일자란은 선정후견인·후견감독인, 후견인임무대행자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.
  (⑧란: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.
  (⑨란: 제출인(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)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 호를 기재합니다.[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]

## 첨 서 류

- 1.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1부(유언에 의하여 후견인후견감독인을 지정한 경우).
- 2.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(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 경우) 재판서 등본 1부(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 경우) \*\*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. 3.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개본증당에,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.

- 4. 신분확인[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]
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
-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
- ※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